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026. 10.28.(수)]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8.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0. 15.
전홍표・권순재・류성국・박강우・박연정
박영주・배명갑・서명일・이우완・차중현
하경석 의원(11명)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10.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전홍표 의원)

가. 제안이유

○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교육 과정 운영 및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에 따라 기존 조례 문구를 정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주요 기능을 규정함(안 제29조)

○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수강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 이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별표를 수정 및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2의2)

○ 이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별지를 수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수상레저안전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입법예고(2026. 10. 15.~ 10. 21.)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은정)

□ 개정목적

○ 본 개정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교육과정 운영과 해양레저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의 설치 및 위탁 근거, 주요 기능, 수강료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신설을 통해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의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연수원의 주요 기능과 수강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별표 2의2 신설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정을 통해 해양레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해상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수강료 산정 기준과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수교육과 해상안전 교육을 전담할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양 안전망 강화 및 레저산업 육성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성이 인정됨

○ 현재 창원시 관내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요트 체험 및 기초 안전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현행 면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보수교육이나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통영·울진 등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비교할 때, 창원시가 면허 보유자의 실전 운항 역량과 조난 시 생존 능력을 배양하는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해양레저 저변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상선 및 어선 분야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의무적인 보수·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레저 분야에도 연수원 신설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8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령에 따른 필수 자격 갱신 과정이나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교육임. 면허 취득·갱신 시 이수가 의무인 수상안전교육과 달리 연수원 교육은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하므로, 수요 확보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으며 명칭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연수원의 신규 건립은 상당한 초기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가

수반되는 만큼, 향후 과도한 재정 부담이나 기존 인프라와의 중복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해양레포츠센터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수요 창출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임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역 해양레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실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정 수강료 산정과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자체 세입을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져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문 교육 과정을 확충하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적정 수강료 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및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관리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대체토론)요지(주요문제점):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

참고 관련 자료

<창원시-통영시 해양레저 교육 과정 및 수강료 비교표>

1. 주요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비교(1인 기준)

구분	창원시 (개정안-연수원 및 센터)	통영시 (현행-요트학교)	비고
보수/심화 교육	[신설] 보수교육 과정 • 수강료: 70,000원 • 시간: 7시간 (이론 1, 실기 6) • 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점검·관리, 항해 기술 등	크루저요트 초급(Level 1) • 수강료: 100,000원 • 시간: 7시간 (이론 2, 실기 5) • 내용: 요트의 이해, 범주코스, 실전 세일링	• 창원시는 면허 취득자 대상의 '보수교육' 명목으로 신설 (7만원) • 통영시는 단계별(초중고급) 심화 과정으로 운영(10만~30만원)
해상 안전교육	[신설] 해상안전교육 과정 • 수강료: 40,000원 • 시간: 4시간 (이론 1, 실기 3) • 내용: 조난 시 생존법, 응급처치 등	단독 안전교육 과정 없음 • 일반 교육과정(7시간, 7만원) 내 기초 수상안전교육 포함 운영	• 창원시는 4시간 특화 생존·응급처치 교육 신설(4만원) • 통영시는 별도 안전 단독 과정 없이 체험/교육과정에 병행
조종면허 과정	조종면허 취득반 • 수강료: 700,000원 • 시간: 5일 과정 • 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연수 및 취득	요트조종면허 취득과정 • 수강료: 500,000원 • 시간: 2일 / 14시간 • 내용: 해양경찰청 지정 면허 취득과정	• 창원시가 교육기간(5일) 및 금액(70만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됨
기초 세일링/자격	자격증 취득반 • 수강료: 150,000원 • 시간: 4일 과정 • 내용: 딩기요트·윈드서핑 자격 취득	딩기요트 / 윈드서핑 교육 • 수강료: 70,000원 • 시간: 1일 / 7시간 • 내용: 세일링 이해 및 범주코스	• 창원시는 4일 단위 자격증반으로 운영(15만원) • 통영시는 1일 단위 실기 체험 중심으로 운영(7만원)

2. 체험 및 시설 이용료 비교

구분	창원시 (개정안-연수원 및 센터)	통영시 (현행-요트학교)	비고
크루저 요트 체험	개인별 수강료 적용 • 1시간: 15,000원 / 1인 • 2시간: 25,000원 / 1인	선박 1척당 시간당 차등 적용 • 12인승: 120,000원 / 시간 • 17~20인승: 170,000~200,000원 / 시간 • 25인승 카타마란: 500,000원 /시간	• 창원시는 개인별 수강료 방식 • 통영시는 선박 1척당 승선 인원 및 시간별 차등 요금제
무동력 레포츠 (카약/래프팅 등)	• 1시간: 15,000원 / 1인 • 2시간: 30,000원 / 1인	• 개별 표기 없음 (체험 세일링 및 크루저 중심으로 운영)	• 창원시가 무동력 카약/래프팅 인프라 및 단가표를 구체화함

자료) 창원시, 통영시 각 조례의 별표 이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내용 정리

<해양레포츠센터 시설 현황>

구 분	진해해양레포츠센터	마산해양레포츠센터
위 치	진해구 천자로 160	마산합포구 돝섬1길 187 (*돝섬 내)
개 장 일	2009. 8. 5.	2011. 8. 12
조 성 사 업 비	37억원(도비 10, 시비 27)	26억원(도비 10, 시비 16)
규 모	○ 부지현황: 9,135㎡ (육상 4,400㎡, 해상 4,735㎡) ○ 해상교육장: 603,000㎡	○ 부지현황: 1,678.3㎡ (육상 1,092㎡, 해상 586.3㎡) ○ 해상교육장: 41,446.5㎡
시설현황	○ 육상(건축연면적: 1,403.7㎡) - 클럽하우스(3층, 1006.2㎡) - 장비보관소(1층, 397.5㎡) ○ 해상: 입출수로, 잔교, 도교, 함선, 계류시설 1식 ※ 점용면적: 4.735㎡	○ 육상(건축연면적: 162㎡) - 클럽하우스(1층, 108㎡) - 장비보관소(1층, 54㎡) ○ 해상: 입출수로, 잔교, 도교, 계류시설 1식 ※ 점용면적: 41.446.5㎡
보유장비	○ 수상레저기구 8종 80대 (크루저요트(1), 딩기요트(28), 윈드서핑(18), 수상오토바이(2), 카약(22), 고무보트(3) 등) ○ 장비 2종 36대(트레일러, 트롤리)	○ 수상레저기구 4종 36대 (크루저요트(2), 딩기요트(19), 카약(13), 고무보트(2) 등) ○ 장비 1종 32대(트롤리)
조성연혁	○ '08.09.: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착공 ○ '09.07.: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준공 ○ '09.08.05.: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개장 (시 직영) ○ '11.02.08: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위탁 ○ '16.12.28.: 조례 개정 명칭 변경 (해양레포츠스쿨→해양레포츠센터) ○ '20.08.21.: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계류장 확장 1,784㎡→4,735㎡)	○ '09년도: 마산 해양레포츠스쿨 착공 ○ '10.04.: 마산 해양레포츠스쿨 준공 ○ '11.02.08.: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위탁 ○ '11.08.12.: 마산 해양레포츠스쿨 개장 ○ '16.12.28.: 조례 개정 명칭 변경 (해양레포츠스쿨→해양레포츠센터)